

# 정 관

# 정 관

[시행 2009.11.26.] [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 승인 2009.10.15. 제정]

[시행 2013.04.10.] [2013년도 제2회 이사회 승인 2013.03.29. 일부개정]

[시행 2013.08.14.] [2013년도 제3회 이사회 승인 2013.08.14. 일부개정]

[시행 2013.12.24.] [2013년도 제5회 이사회 승인 2013.12.17. 일부개정]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법인은 IT융합 부품산업에 관한 연구개발 역량 제고와 기술력 향상 및 부품산업과 관련된 산·학·연·관과의 지역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칭)**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.)이라 한다.

**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**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경상북도 경산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소를 둘 수 있다.

**제4조(사업)** ①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IT부품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지원
2. 산·학·연 공동기술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
3. IT부품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·보육·유치 및 육성·지원 사업
4. 정보 유통망 구축과 기술·경영지도 및 교육사업
5. IT부품산업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
6. IT부품산업 관련 각종단체 및 협의회 운영
7. IT부품산업분야의 연구개발, 기획 및 조사
8.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기업 등의 위탁사업과 용역사업

9.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② 법인은 제1항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.

## 제2장 자산 및 회계

### 제1절 자 산

**제5조(재산)**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②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 및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.

1.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2. 설립이후 정부, 지방자치단체, 법인 및 개인이 출연한 토지, 건물 등 부동산
3.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
4.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

③ 법인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【별표 1】 과 같다.

④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**제6조(재산의 관리)** 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양도·증여·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타 동 재산에 대하여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법인이 매수·기부채납,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.

③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유지,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7조(재산의 평가)** 법인 재산의 평가는 취득 가액에 의한다. 다만,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에 의한다.

**제8조(경비의 조달방법 등)**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관련기관 출연금, 보조금, 재산운용에서 발생하는 과실금, 사업수익 및 기타수입으로 조달한다.

### 제2절 회 계

**제9조(회계의 구분 등)** ①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, 기타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.

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구분에 관한 법인세 관련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.

**제10조(잉여금의 처리)** 법인의 각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.

1. 이월 손실금의 보전
2. 다음연도 목적사업 운영비용으로 이월
3.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적립

**제11조(회계연도)** 법인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.

### 제3절 예산 및 결산

**제12조(사업계획과 예산)** 법인은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안을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결산)**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보고서
2.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
3. 당해 사업연도 사업계획과 실적 및 수지결산서
4.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
5. 기타 결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

## 제3장 위원회 구성 운영

**제14조(위원회 구성·운영)** ① 법인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## 제4장 기 관

### 제1절 임 원

**제15조(임원)**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1. 이사장 1인
2. 이사 5인 이상 12인 이내(이사장 포함)(개정 2013.12.24.)
3. 감사 2인

**제16조(임원의 선임)** ① 이사장은 경산시장이 된다.

② 당연직 이사 중 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고, 선임의 절차와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.(개정 2013.05.07.)

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,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.

1. 경산시장
2. 삭제(개정 2013.12.24)
2. 경상북도 소관담당실·국(본부)장(개정 2013.08.14)
3. 경산시의회 소관상임위원회위원장
4.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장

④ 선임직 이사는 IT융합부품산업분야 산·학·연·관의 전문인 중에서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⑤ 감사 2인 중 1인은 경산시 소관부서 국장급을 당연직으로 하고, 1인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비상근으로 한다.

**제17조(임원의 임기와 해임)** ①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직을 상실했을 때는 후임자가 그 직을 승계한다.

② 선임직 이사, 감사,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  
(개정 2013.05.07.)

③ 선임직 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한 경우는 그 후임자를 2월 이내에 선임한다.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④ 재단의 특별한 사유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차기 임원을 선임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임기 만료에도 불구하고 차기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.

⑤ 임원이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또는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. 다만, 임원이 스스로 그 직을 그만 두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 없이 해임할 수 있다.

**제18조(임원의 직무)** 법인의 이사장,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며,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2.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22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3. 이사장이 결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6조 제2항의 당연직 이사가 그 기재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19조(감사의 직무)**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법인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
2.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6.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

**제20조(임원의 결격사유)**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미성년자
2.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4. 선고유예 기간 중이거나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## 제2절 이 사 회

- 제21조(이사회 구성)** ①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.  
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  
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**제22조(이사회 의 기능)**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법인의 사업계획(실적) 및 예산·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
2. 법인의 차입금 및 기본재산의 취득·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3.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4.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5. 법령, 조례,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6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7.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
**제23조(이사회 소집)** 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1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.

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그 일시, 목적, 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24조(의결정족수 등)**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**제25조(서면의결)**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**제26조(의결제척사유)** 이사장 또는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1. 법인과 이사장 또는 이사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장 또는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3.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

**제27조(회의록)**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사장과 이사장이 지명하는 출석이사 2인 및 출석한 감사가 기명·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
## 제3절 해 산

**제28조(해산)**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**제29조(잔여재산의 귀속)**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고,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 또는 무상대부 한다.

## 제5장 조 직

### 제1절 정 원

**제30조(직제 및 정원 등)** 법인의 직제, 정원,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### 제2절 임 면

**제31조(직원의 임면 등)** ① 법인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.

②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법인은 필요한 경우 참여 기관의 장에게 업무대행 또는 소속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법인의 조직, 정원, 분장업무 및 직원의 임면과 복무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

## 제6장 보 칙

**제32조(정관의 변경)**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**제33조(시행규정)**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34조(공고의 방법)** 법령과 재단의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게재한다. 다만,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

**제35조(준용)**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조례, 주무관청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관계 법규를 준용한다.

부 칙 [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 승인 2009.10.15. 제정]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설립당시의 임원)** 법인 설립 시 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한다.

**제3조(초대원장)** 법인 설립 시 초대원장은 센터장이 되며, 임기는 센터장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. 다만, 법인 설립전 위촉 업무추진중인 자에 대하여는 동 정관의 규정에 의거 임면(위촉) 된 것으로 본다.

**제4조(사업연도)** 이 법인은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부터 당해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설립연도에 속하는 회계연도의 필수경비는 출연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.

부 칙 [2013년도 제2회 이사회 승인 2013.03.29. 2013.05.07. 주무관청 허가]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[2013년도 제3회 서면 이사회 승인 2013.07.26. 2013.08.14. 주무관청 허가]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 한다.

부 칙 [2013년도 제5회 이사회 승인 2013.12.17. 2013.12.24. 주무관청 허가]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 한다.

**【별표 1】**

**설립당시 기본재산 목록**

**1. 기본재산 총괄표**

재 산 명	수 량	평 가 액	비 고
현 금		100백만원	

**2. 기본재산 세부목록표**

재 산 명	소 재 지	번 지	지 목	면 적	평 가 액
경 산 시 출 연 금					100백만원